

등록번호 제 호

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

1. 상호(명칭)

2. 성명(대표자)

3. 주된 사무소 소재지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